

제235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2017. 11. 3.(금) 11 : 00
제 2 차 본 회 의

심 사 보 고 서

담당자	팀 장	사무과장	결
			재

협조:

의 회 운 영 위 원 회

제235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2017. 11. 3.(금) 11 : 00
제 2 차 본 회 의

심 사 보 고 서

-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의회운영위원회

의안번호	제415호
의결연월일	2017.11.1.

-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17. 10. 11. 강연중, 강재석, 김만겸
- 회 부 일 자: 2017. 10. 26. 의회운영위원회
- 상 정 일 자: 2017. 11. 1.

제235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 의회운영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발의자 대표: 강연중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7. 9. 21. 개정되어 「내포문화사업소」가 신설됨에 따라 예산군의 회 위원회 조례 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범위) 제2항 제3호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내포문화사업소를 추가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: 성 호 기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내포문화사업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